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규제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규제는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의 방법만 사용하여 국가의 생산성에 해를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완화의 폐해는 미국, 영국, 칠레 등으로 하여금 금융위기를 겪게 하였다. 이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재규제와 더불어 좋은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규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규제를 통해서 규제대상자들은 규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끊임없이 협상하고, 규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의 방법론도 직접적인 규제에서부터 자율규제에 이르기까지 규제강도와 참여의 정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대상자들의 비용이 최소화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정부의 강제성과 직접성을 최소화시키고, 투명성과 자동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제어: 좋은 규제, 정책도구, 규제평가

I. 들어가는 말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년만에 규제의 50%를 완화시킨 실적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법제화나 행정부담시범측정 등의 규제개혁의 수단적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규제개혁에 대한 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185)

**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정부혁신, 사회정책, 규제정책이다(johanju@cau.ac.kr).

적에 대해 국내적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규제개혁의 가장 초기적 형태인 ‘규제완화’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특정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 피해를 보게 될 집단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으면서 난항에 빠져 있고,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한국의 규제개혁이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에 비해 국내적 실적평가가 저조한 것은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규제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할 정부의 부정적 통제수단이 아니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과도한 규제나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규제들은 과감히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인 규제의 방법론과 집행체제를 발전시켜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세계적 규제개혁의 방향은 전환되고 있다.¹⁾

1970년대 시작된 규제개혁은 규제를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적 생산성의 저해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은 규제철폐에 가까운 규제완화가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철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식품, 에너지, 안전 등에 있어서 불안요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 영국, 칠레 등의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으로 ‘재규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nyder, 2001).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규제는 규제를 과거로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질 높은 좋은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규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 규제개혁이 ‘좋은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던 시점에 시작된 한국의 규제개혁은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규제철폐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던 규제의 질적인 측면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양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숨은 규제를 양성하는 결과

1) ‘좋은 규제’는 영국에서는 ‘better regulation’, 미국에서는 ‘smart regulation’로 표현된다.

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들어서서 한국적 규제개혁은 다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철폐의 패러다임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규제개혁이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구로서의 규제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외국의 규제개혁을 외형적으로만 답습한 결과라고 하겠다. 어느 국가에서든 정부업무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규제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규제개혁은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규제의 양적·질적 측면을 떠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로서의 규제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 규제의 의의와 문제점을 밝히고, 세계적인 규제개혁에 의해 확립되고 있는 좋은 규제의 기제와 방법론을 설명하고 평가하여, 한국정부에서도 정책도구로서의 규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전통적 규제

1. 전통적 규제의 발전과정

전통적규제(classical regulation)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넓은 의미의 규제라고 하면 모든 법이 다 포함이 되고, 이 경우에는 규제의 시작은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할 것이다(High, 1991).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규제는 19세기 말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887년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설립과 함께 가격차별과 특정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금지를 중심으로 한 반독점규제가 시작되었다(Gujarati, 1984).

이와 같은 경제규제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이다. 대공황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합리화되면서, 규제의 역사는 규제확대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되던 규제는 1960년대 사회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 2의 팽창기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면서, 복지국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관심은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서부터 중산층에 대한 복지로 점차 커졌다. 이러한 중산층에 대한 국가 서비스의 성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도록 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국가행정에 대한 수요는 보건, 환경, 안전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요는 당시의 대기업들의 윤리성에 대한 불신에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Weidenbaum, 1979). 대기업들 간에 기업들도 사회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들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작업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수준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경제규제뿐 아니라 사회규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파동에 의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로의 이념전환을 가져오게 하였고, 시장실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부실패’의 개념을 낳게 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양적 팽창과 강한 규제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부터 규제는 양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위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규제완화의 신화는 1986년 S&L(저축대부조합)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너져 버렸다. S&L 사태는 1980년대 초의 규제완화의 영향이 컸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들은 투자대상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주요 수익원천이었던 모기지로부터, 위험은 컸지만 성공할 경우 수익이 높은 부동산투자나 개발사업투자 쪽으로 수익사업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투자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대부조합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저축계좌를 늘렸다. 정부는 1984년부터 다시 규제를 손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많은 저축대부조합들은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1986년에는 문제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Jameson, 2002).

영국, 칠레 등도 금융규제완화 이후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고, 규제완화에 대한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재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결국 규제는 경제를 망치

는 정부의 통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의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생산적인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규제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였다(Lemaire, 2005).

2. 전통적 규제의 작동기제

규제의 작동기제는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공통적인 것이 있고, 각각 다른 것이 있다. 공통적 작동기제는 무엇보다 규정(rule)과 집행(enforcement)이다. 경제규제는 시장경쟁의 보장과 시장불경쟁의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규제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환경, 보건,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통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행위로서,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경제규제의 독특한 작동기제는 ‘가격통제’, ‘진입통제’, ‘생산통제’로 이루어진다(Salamon1, 2002). 가격통제는 독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작동기제이다. 하지만 가격통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격은 기업의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 이윤이 남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업의 투자를 막아서 시장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진입통제는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진입기업이 고객들에게 표준이상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이 기존의 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잠재적 수요가 충분히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입통제는 시장경쟁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것이다.

생산통제는 일반적으로 가격통제와 같이 사용된다. 기업들은 생산과 비용이 합치되는 점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과 가격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생산통제의 목적은 우선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적 표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이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제도 한다.

사회규제에 독특한 규제기제는 ‘표준설정’과 ‘벌금이나 보상’이다(May, 2002). 표준설정의 경우는 음식이나 약품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향을 갖추도록 표준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특정 과정을 거쳐서 치

료를 해야 하는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규제는 행위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규제의 기제를 사용한다. 여기서 벌금이 너무 가볍게 부과될 경우에는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위반하여서 얻는 이익에 대한 적은 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보상 역시 너무 적을 경우에는 보상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보상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도 클 뿐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의 권장보다, 이익추구를 권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전통적 규제의 기제들은 규제대상자들의 참여보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기제들이다. 물론 가격을 결정하거나, 표준을 정할 때, 규제대상자들의 참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수동적 수준의 참여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규제마다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슈별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규제들을 검토하는 과정도 생략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밝혀진 이후, 재규제와 좋은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규제기제들과 방법론들이 연구 및 집행이 되고 있다.

Ⅲ. 정책도구로서의 좋은규제

1. 좋은 규제의 도구적 특성

정책도구 또는 정부도구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용을 집약해보면,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한, 2007). 여기서 정책의 목표는 사회문제를 집합적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구의 개념만으로는 왜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정책수단들이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독립적인 정책연구주제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Howlett은 초기의 정책도구연구는 경제학자들이 주도를 했으

며, 주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005). 시장실패에 대립된 개념인 정부실패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던 경제학자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장적 접근을 선호하였고,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해결에는 부정적 인식을 지녔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가장 선택되어서는 안되는 정부의 잘못된 수단이란 오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이분법적인 관심보다는 정책 자체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도구의 발전을 뉴거버넌스적 정부환경의 변화로 보는 관점도 있다(Salamon.1, 2002). 뉴거버넌스적 정부환경의 변화는 국가간의 관계를 계층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것으로 보았고, 정부와 민간의 대립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협동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구도 명령과 통제보다는 협상과 설득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정부 프로그램의 성패에 대한 관심보다 실제로 정부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도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규제 역시 정책도구의 연구 초기에는 선택되어져서는 안되는 정부수단으로 취급되어졌지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의 문제가 인식되면서 다시금 중요한 정책도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도구로서의 규제는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명령과 통제의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했다. 규제의 방식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규제대상자들에게 가능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제방법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좋은 규제의 개념이 탄생되게 하였다. 좋은 규제는 가능한 규제대상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규제대상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협상과 설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대상자들이 규제로 인해 가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기제와 방법론들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2. 좋은 규제의 작동기제

좋은 규제를 위한 작동원리가 전통적 규제의 작동원리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

니다. 다만 정책도구로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통적 작동원리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이고 일방적이면서, 유연성이 부족한 전통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규제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좋은 규제의 원칙(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연구된 분야는 ‘좋은 규제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좋은 규제의 원칙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규제들이 이 원칙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도 이 원칙에 따라 만들 수 있다.

가장 종합적인 좋은 규제의 원칙은 OECD와 APEC이 함께 3년에 걸쳐서 연구하여 제시한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 체크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이다. 이 체크리스트에서는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원칙과 더불어 세부적으로 규제정책, 경쟁촉진정책, 시장개방정책을 위한 규제의 원칙들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APEC-OECD, 2005)

APEC-OECD의 체크리스트만큼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개별 국가들의 규제위원회나 규제담당기관들 역시 다양한 좋은 규제의 원칙들을 연구하여 왔다. 가장 단순한 원칙은 Brookings Institution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책임성(accountability)’과 ‘비용편익분석’으로만 구성되었다(Crandall et al., 1997).

영국도 꼭 필요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신뢰받을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의 원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BRITFa, 2005). BRITF에서 내세운 좋은 규제의 원칙은 ‘균형성(proportionality)’, ‘책임성(accoun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표적화(targeting)’ 등의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미국 등의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기관들이 좋은 규제를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이러한 많은 기관들의 좋은규제의 원칙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좋은 규제를 위한 원칙

기준	내 용
책임성	규제관료가 정부, 의회, 시민에 규제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투명성	규제의 목적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백하고 단순하며,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지속성	규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어떠한 규제대상도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가
공정한 절차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이 공정하며, 규제대상이 부당한 규제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식적인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치적 지지도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인, 이익집단,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지지가 충분한가
전문성	규제담당자나 규제개혁기관의 관료들이 규제대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규제 자체에 대한 충분한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전사적 개혁	규제개혁과 좋은 규제에 대한 수용도와 이해도가 정부의 모든 수준의 기관들에게 골고루 체감되고 있는가
포괄성	규제개혁이 개별적 규제가 아닌 사안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효율적 시장 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가
참여성	규제와 관련된 집단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되어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표적화	규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대상의 한계와 범위가 명백히 정해져 있는가
균형감	규제외의 대안적 방법에 대한 검토가 공식화되어서, 선택된 전통적 규제가 바람직한 정책도구라는 검토가 항시 이루어지는가

자료: 조성한, 2006

2) 과학적 규제분석기법

전통적 규제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서 이에 따른 손익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분석기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었다. 전통적 규제는 과학적인 분석기법보다는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책도구로서의 좋은 규제는 규제집행에 따른 결과를 최대한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분석대상은 규제의 결과(outcome), 위험(risk), 효과성, 능률성, 그리고 경제성 등이다(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 규제를 만들기 전에 위험에 대한 측정과 바람직한 규제의 결과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부는 엄격성과 융통성을 같이 갖추게 되면서, 규제 대상자들의 순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Lukken, 2007).

과학적 규제분석기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 기법은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이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이 사용하는 통합된 의사결정지원과정(decision support process)이다(김정해, 2006). 규제정책의 결정자들을 위해서 RIA는 현재의 규제나 새로운 규제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효과분석의 결과만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RIA는 첫째, 규제정책의 목적과 해결하려는 문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규제적·비규제적 대안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대안들에 대한 비용, 이익, 분배적 효과 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넷째, 각 대안들의 집행과 순응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과 능률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사후감독체계를 개발한다. 여섯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OECD1, 2008).

RIA는 규제의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개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8년 RIA를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모든 새로운 규제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²⁾

2) 미국의 경우에 100만불 이상의 비용이 드는 RIA가 한국에서는 조사비용도 안되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제안하는 규제기관에서는 규제제안을 위한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최근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분석기법이다. 위험분석은 RIA에 비해서는 규제전반에 활용되는 체계적 규제분석기법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다(김신, 2007). 따라서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위험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위험분석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위험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작된다. 특정 전염병의 발생은 검역시스템의 위험분석의 계기가 된다. 특정 기업의 인체에 위해가 되는 오염물질의 방출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위험분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위험분석은 RIA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강조된다. 투명한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된 위험규제는 순응성을 높여준다. 위험분석은 또한 규제비용도 축소시켜 주기도 한다. 가장 위험에 취약한 산업이나 기업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의 대상범위도 축소시켜주고, RIA가 필요한 분야도 축소시켜준다.

행정비용부담측정(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s)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따라 지불되는 정보제공비용의 측정을 의미한다(OECD2, 2007). 정보제공비용이란 기업이 규제에 의해 지적된 정보들을 매년 정부에게 제공하는 비용이다. 정보의 내용은 규제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특정 고용인들의 비율, 재무제표, 오염물질 방출방지시설의 현황 등 다양하다.

기업들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규제기관들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규제에 의해 불필요할 정도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 방법에 따라 그 비용의 크기도 다를 수 있다.

행정비용부담측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행정비용부담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매년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축소시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활성화된 이 규제분석기법은 아직 시행초기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평가한 행정비용부담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점차 이 기법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늘고 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RIA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의회에서도 규제심사를 할 경우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이다.

3) 규제전달체계 정비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작동원리는 ‘규제전달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달체계라는 용어가 규제에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Hampton과 Rogers는 각각의 보고서에서 규제를 서비스로 표현하고 있다(Hampton, 2005; Rogers, 2007). 두 보고서는 규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규제자나 규제대상자 모두가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5년 이후 영국의 규제개혁은 대부분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규제전달체계의 개혁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각 부처산하의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가능한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들간의 규제도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여 한 부처가 담당하거나, 최소한 규제정보체제를 정비하여 규제대상자들이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와 관련된 연계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지방정부들 역시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을 서로 연계하는 규제조정기관을 설립하여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추구하고 있다.

영국과 함께 규제개혁에 앞서가는 네덜란드 역시 규제전달체계의 개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영국과 규제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이 흡사하지만,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웹기반이 연계되고 공통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에서 한 번 자료를 입력하면 그대로 정부로 전달되어 자동집계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점에서 앞서간다(OECD3, 2007).

영국이나 네덜란드만큼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규제전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 역시 규제전달체계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후감독체계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소기업행정에 있어서 규제전달체계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긴밀한 연계가 적기 때문에 주로 기관간 조정에 힘쓰고 있다.

IV. 좋은 규제의 방법론적 발전

좋은 규제는 전통적인 직접규제의 작동원리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다양한 대안적 방법이나, 민간의 참여,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의 예방과 같은 방법론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발전은 주로 규제의 '강제성'과 '직접성'을 완화시키면서, 규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직은 대부분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 실패요인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1. 대안적 규제

1) 대안적 규제의 채택논리

대안적 규제(regulatory alternatives)에 대해서는 90년대 후반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ldwin & Cave, 1999; OECD3, 2002; BRTFb, 2005). 대안적 규제는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일방적 규제보다 더 낮은 정책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정부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제를 단순한 명령통제가 아닌 정부의 중요한 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규제를 발전시키고 채택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행위자들의 완벽하지 못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이 꼭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INTOSAI, 2002). 이러한 의문에는 전통적 통제의 방법이 최우선인가 하는 의문도 포함이 된다.

둘째, 융통성 없는 법에 바탕을 둔 비탄력적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안적 규제가 연구되고 채택된다. 시장과 산업의 행동문화와 환경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데 시장행위와 산업의 생산을 감독하는 규제는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방법이 더 효율성이 높다.

셋째, 시장과 산업의 창의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대안적 규제가 더욱 도움이 된다. IT와 같은 새로운 시장거래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생산과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하에서는 발전되기가 어렵다.

넷째, 특히 전문성이 높고 생산이나 거래과정이 복잡한 경우에 법에 의한 규제

는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인 집행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자들이 규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안적 규제들은 직접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비용이 적게 든다.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규제를 위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는 더욱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2) 대안적 규제의 종류

대안적 규제는 여섯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서, 규제의 표적화 논리를 강화시킨 ‘성과규제(performance-based regulation)’와 ‘과정규제(process-based regulation)’이다. 성과규제는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안전 등의 분야에 해당되는 규제이다. 그러나 성과규제의 경우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과정규제는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규제로서 생산 등의 행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을 규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적 방법으로 ‘허가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가 대표적이다. 허가권 거래제도는 주로 환경규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수질이나 대기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한정된 숫자의 오염배출권을 발행하여 배출자들 간에 시장기제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나태준, 2007). 이 제도는 초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허가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형성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행위자들에 의해 규제가 자동적으로 집행되고, 배출자들이 가장 최적의 배출량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재정적 유인에 의한 방법이다. 조세와 보조금을 사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다. 조세나 보조금에 의한 방법은 행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시장행위가 왜곡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공표(disclosure)에 의한 방법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생산품이나 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공표의 방법은 역으로 바람직한 생산이나 행위를 공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공표에 의한 방법을 사용

할 경우에는 공개되는 내용과 자료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동규제(co-regulation)나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방법이다. 자율규제는 합당한 규정들을 민간협회에서 정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방법이고, 공동규제는 규정은 정부가 정하거나 민간협회와 공동으로 정하고, 규제는 협회가 스스로 하는 방법이다. 공동규제의 경우 정부는 협회가 규제집행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만 감독을 한다.

규제의 대안들이 직접적 규제보다 무조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규제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클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적 규제들은 전문성이 높고, 규제의 방법이 복잡하고, 규제대상자들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는 원래 미국의 제도로 일본에서는 법령적용사전 확인수속제도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 또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라고 불리운다. 비조치의견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제도구 중의 하나이다.³⁾

비조치의견서란 새로이 도입된 규제가 기업의 사업활동이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기업은 자신들이 수행할 행위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당해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예측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시간 및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준다(김정해·조성한, 2007).

비조치의견서는 정부가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법이나 규제 위반여부를 사전

3)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기업과 관련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확대 도입되었다(OECD4, 2004).

에 심사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본 제도를 통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주고 시장친화적이며 투명한 규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금융감독위원회, 2005; 김진철, 2004: 112-114; FERC 인터뷰; SEC 인터뷰).

첫째, 비조치의견서는 범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며 이에 따른 정부의 사후 사건 처리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정부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나 위반행위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SEC 인터뷰).

둘째, 비조치의견서는 사전에 규제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고 그 결과까지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그 결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했던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순응도를 높여 주는 중요한 규제수단이 된다. 예측가능성이 있는 규제여야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좋은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OECD4, 2004).

셋째,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승인답변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이유로 제3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승인된 기업의 활동은 어느 정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며 법률상의 위험을 회피·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과정들은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교육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다섯째,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정보수집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미 공표된 비조치의견서는 문제 영역의 정책을 형성하고 수립할 때 밑받침이 되며 정책형성의 도구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기업활동개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자 본 제도의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모델을 만들어 모든 부처에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연이어 FTA협상이 유럽, 일본, 중국 등지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비조치의견서의 도입확대는 더욱 시급하게 될 것이다. 비조치의견서가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꼭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조치의견서는 규제를 투명하게 해 줌으로서,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순환보직이 잦은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비조치의견서는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환경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제고된다.

둘째, 비조치의견서는 바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불만과 의심을 일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외국계기업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규제담당공무원의 신뢰성 있는 답을 들을 수 있고, 비조치의견서가 계속 공개되면서 예측성도 높아지게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아직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투자가나,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해서 미리 자신들의 투자가 국내진출에 있어서의 규제비용을 타진해 볼 수 있다.

3. 정책도구로서의 좋은규제의 평가

정책도구를 평가하는 지표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Salmamon이 제시한 ‘강제성(coerciveness)’, ‘자동성(automaticity)’, ‘직접성(directness)’, ‘투명성(visibility)’의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Salamon, 2002).

1) 강제성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책도구들 중에서 가장 강제성이 높은 도구이다. 그러나 대안적 규제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약화된다. 규제대안들 중 직접규제나 자율규제, 공동규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행위자들의 선택이 보장된다. 물론 행위자들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처럼 생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비용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규제의 발전은 정부의 강제성을 상당히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 자동성

자동성은 정부가 특별히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재정을 들이지 않아도 정책도구가 집행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규제대안들의 경우 자동성의 정도가 서로 매우 다르다. 가장 자동성이 낮은 대안은 당연히 직접규제이다. 직접규제는 대부분 규제를 집행하는 새로운 부서나 기관의 설립이 우선시 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비용이 지불된다.

가장 자동성이 높은 규제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이다. 허가권 거래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동성이 높지만, 초기에 정부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임시적 기구와 비용이 들어간다. 조세나 보조금의 경우는 새로운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보조금의 경우 재정적 지출은 크다.

3) 직접성

직접규제와 조세 및 보조금, 그리고 공표에 의한 규제는 직접성이 높지만, 다른 규제대안들은 직접성이 약하다. 허가권거래제도의 경우는 초기의 시장형성은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자동성이 강해진다.

4) 투명성

투명성은 제도가 국회의 입법에 의할 경우에 가장 투명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규제는 투명성이 가장 높다. 공동규제도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조세 역시 국회의 감사를 받는 제도로 운영된다면 투명성이 높게 된다.

다른 규제대안들은 운영의 방법에 따라 투명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공동규제나 자율규제의 경우 규정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규제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한다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V. 결론

한국의 사회적 인식과 달리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시장경제의 보호이다. 국민의 안전과 시장경제는 규제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는 더 이상 폐기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좋은 규제’는 바로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두고 있다. 규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전통적 규제와 달리 집행의 비용이나 순응의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통제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온 규제를 국가의 안전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근 규제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좋은 규제의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규제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규제기제의 발전은 우선 좋은 규제가 되기 위한 규제과정이 갖추어야 할 원리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규제 분석기법들이란 기제들의 활용도 권장되고 있다. 또한 좋은 규제를 만드는 기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규제과정을 합리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기제도 최근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안적인 규제방법들의 연구이다. 대안적 규제방법들은 규제대상자들의 참여와 선택을 강조하고, 정부규제의 직접성과 강제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대안적 규제는 아니지만, 규제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새로운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비조치의견서와 같은 방법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좋은 규제의 기제들이나 새로운 규제방법들의 상당부분은 이미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을 전통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규제를 정책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새로운 규제기법이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규제철폐를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는 자기모순이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태생적으로 50% 이상의 업무를 규제를 통해 집행한다. 시장경제가 불편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정책도구는 필

수적이다. 이러한 규제를 무조건 철폐만 하려는 순간 미국, 칠레, 영국 등이 겪었던 금융위기와 같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규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다. 규제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규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꾸준히 좋은 규제를 만드는 연구와 집행과정의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규제철폐와 재규제의 순환과정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규제는 좋은 규제로 발전될 수 없고, 사회악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2005).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제정안: 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방안.
- 김신. 2007.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해. 2006.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강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해·조성한 (2007)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확대적용방안.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 김진철. (2004). 주주제안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나태준. 2007.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13(2): 51-73.
- 전영한.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1-37.
- 조성한. 2006. “거버넌스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19.
-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개혁종합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홍성수. 2008. “규제학-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 379-406.
- APEC-OECD. 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 BRTF_a. 2005. *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London: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BRTF_b. 2005. *Routes to Better Regulation- a Guide to Alternatives to Classic Regulation*. London: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Crandall, R.W., C. DeMuth, R.W. Hahn, R.E. Litan, P.S. Nivola & P.R. Portney. 1997. *An*

- Agenda for Federal Regulatory Reform*.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 *Principles-based regulation: Focusing on the outcomes that matter*. Londo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Hampton, Philip. 2005.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London: HM Treasury.
- High, Jack. 1991. *Regulation: Economic Theory and Hist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owlett, Michael. 2005. *What is a Policy Instrument?: Tools, Mixes, and Implementation Style*. in Pearl Eliadis, Margaret M. Hill and Michael Howlett eds. *Designing Government*.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INTOSAI. 2002. *Alternatives to State-Imposed Regulation*. A Paper for the Ninth Meeting of INTOSAI Working Group on the Audit of Privatization.
- Jameson, Rob. 2002. *U.S. Savings and Loan Crisis*. An Erisk.com Case Study. <http://www.erisk.com/Learning/CaseStudies/USSLCaseStudy.pdf>
- Lemaire, Donald. 2005. *The Stick: Regulation as a Tool of Government*. in Evert Vedung et al. eds.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 Their Evaluation*.
- Lukken, Walt. 2007. *The Keys to Smart Regulation*. Speech at FIA Expo 2007.
- May, Peter J. 2002. "Social Regulation," in Lester M. Salamon ed. *the Tools of Government*, 1-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₁. 2008. *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ance for Policy Makers(RIA)*. Paris: OECD.
- OECD₂. 2007. *Cutting Red Tap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the Netherlands*. Paris: OECD.
- OECD₃. 2002.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 OECD₄. (2004).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in Japan: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Paris: OECD.
- Rogers, Peter. 2007. *National Enforcement Priorities for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s*. Lond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Salamon, Lester M.₁ 2002. "Economic Regulation," in Lester M. Salamon ed. *the Tools of Government*, 1-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amon, Lester M.² 2002.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in Lester M. Salaman ed. *the Tools of Government*, 1-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Richard. 2001. *Politics after Neoliberalism: Reregulation in Mexic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denbaum, Murray L. 1979. *The Future of Business Regulation*.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